

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연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정연욱 · 안철수 · 조경태
김소희 · 박정하 · 서지영
이성권 · 신성범 · 이종배
이헌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,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, 공예문화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, 공예문화산업의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·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,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,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·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

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
것임(안 제4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).

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표준계약서의 개발·보급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계약에 관한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
2. 제10조에 따른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
3. 제13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
4.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

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

제7조제1항 중 “정기적으로”를 “매년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·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(이하 “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표준계약서의 개발·보급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계약에 관한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1.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</u> <u>2. 제10조에 따른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</u> <u>3. 제13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</u> <u>4.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</u>

제6조(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)

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3. (생략)

② ~ ⑦ (생략)

제7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)

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실태조사) ① -----

-----매년-----
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·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(이하 “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